

[문] 特殊建物所有者로서 계약시마다 保險者가 告知義務와 고지사항을 이야기 하는데 이에 대한 說明을 하여주십시오?

[답] 保險者가 계약시마다 고지사항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코자 합니다.

보험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被保險者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告知義務라고 합니다.

이는(商法 제651조) 어디까지나 告知는 계약이 성립시까지 하면 되고 또한 이때까지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告知義務는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이며 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진정한 의무는 아닙니다.

즉 보험계약상의 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한 또는 계약의 해지를 저지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들의 告知義務가 이 告知義務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며 그이상 보험자가 이 의무에 대응하는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告知義務에 위반한 保險契約者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告知義務에 관한 商法

제651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特約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保險契約者는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는 절대적 危險 사항과 關係的 위험 사항이 있는데 전자는 직접 보험의 목적 또는 피보험자의 신체에 존재하는 위험사항(예: 건물내의引火하기 쉬운 물건의 장치, 피보험자의 유전 既往症, 건강상태 등)을 말하고 後者는 보험의 목적 또는 피보험자의 환경에 존재하는 위험사항(예: 건

## 相談 코너

### 火災 保險

물근처의 상황, 피보험자의 직업, 계약자의 관계등)을 가리키며 또한 告知義務者란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써 보험계약자와 被保險者를 말합니다.(상법 제651조)

被保險者는 손해보험 특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人保險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자가 이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 代理人에 의하여 보험계

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의 위반 여부는 代理人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商法 제646조, 민법 제116조)

여기에는 告知하는데 時期와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의 告知는 계약당시에 하여야 한다고 설명드렸듯이 보험계약자들의 고지의무 위반의 유무는 계약의 성립시를 標準으로 하여 정하며 청약시를 標準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계약 성립시에 한 고지를 성립후에 변경, 철회하거나 추가함으로써 성립시의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보정하지는 못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때를 표준으로 하여 고지의무의 위반의 유무를 정합니다.

告知의 방법으로는 법률상의 제한은 없으며 書面에 의하든 口頭에 의하든 상관없으며 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무방합니다. 의무자 자신은 代理人으로 하여금 고지할수도 있습니다. ♣

金 陽 勳

〈本協會 保險 2部 · 代理〉